

집단소송법안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54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용혜인 · 한창민 · 김남희
정춘생 · 정혜경 · 소병훈
서미화 · 이주희 · 윤종오
전종덕 · 손 술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쿠팡에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를 쿠팡이 대하는 태도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유통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찾기 어려움. 이처럼 보안 투자 및 관리 소홀에서 비롯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뿐만 아니라 다수 금융 및 플랫폼 기업 등에서 반복·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집단적 피해를 입히는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만이 아니라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소비자 피해 사건 그리고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 주식거래에 의한 소액주주 피해 사례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는 양상임.

이와 같이 국민의 집단적 피해가 되풀이되는 배경으로는 이윤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갖는 민사법적

제재의 수단이 좁고 그 수위도 낮다는 점이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증권관련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적용 분야를 포괄적으로 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또 정보 비대칭 상황 등으로 가해 기업에 비해 소송 수행 능력이 제한된 원고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대등한 수준에서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 등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집단소송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집단적 피해의 전(全) 분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 법의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집단소송의 관할 및 병합심리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전문성 등 집단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

의를 채택함(안 제6조).

라. 소장과 소송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소장에 붙일 인지액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집단소송에 관한 공고를 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요건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사.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 및 소송허가 절차를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사임·결원에 따른 수계·변경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자.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려는 구성원의 제외신고에 관하여 정함(안 제25조).

차. 소송절차에서의 주장·답변 및 석명에 관한 특칙을 정함(안 제29조).

카. 소송과 관련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제출명령과 송부촉탁에 관하여 정함(안 제31조).

타. 자료등 제출명령 위반 시의 효과에 대하여 정함(안 제32조).

파.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34조, 제35조).

하. 비밀유지명령에 관하여 정함(안 제36조, 제37조).

거.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에 관하여 정함(안 제39조).

너. 집단소송의 판결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40조).

더.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43조부터 제51조까지).

러. 집단소송을 통해 취득한 집행권원에 의한 권리 실행 및 이를 통해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분배에 관하여 정함(안 제52조부터 제71조까지).

며. 위임규정에 대하여 정함(안 제72조).

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에 관한 배임수재·배임증재 등 처벌에 대하여 정함(안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정함(안 제76조).

집단소송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2. “총원”(總員)이란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填)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除外申告)란 구성원이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신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집단소송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청구에 대

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할) ① 집단소송은 피고(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집단소송이 계속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제2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5조(병합심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복수의 집단소송이 동일한 법원(제4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복수의 집단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병합심리한다. 다만,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제기된 집단소송 전부를 소송이 제기된 법원 중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집단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집단소송을 병합심리하는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 또는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제8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6. 총원의 추정 합계 피해액

③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의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과거 집
단소송 관여 경력

6.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

④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 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인가·허가 등의 권한
이 있는 주무관청이나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

고, 해당 감독기관등은 그 사실을 공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8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원고측 소송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과거 집단소송 관여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소

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소송허가 요건) 집단소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8조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제12조(소송허가 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당사자는 소송허가 재판 중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제5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문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총원의 범위에 따른 허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主文)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4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제13조제1항 후단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고지·공고·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집단소송 신청이 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이 경우 집단소송을 불허가하는 결정(이하 “소송불허가 결정”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 후단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소송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제13조제1항 후단의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

11.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감독기관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등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등) ① 구성원은 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은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구성원과 현재의 대표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9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제1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지 여부에 대한 재판은 신청한 대표당사자와 피신청 대표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0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辭任)할 수 있다.

제21조(대표당사자의 결원에 따른 소송의 진행) ①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 대표당사자가 된 구성원이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대표당사자 변경 등의 고지) ① 법원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되거나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제1항의 결정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제외신고) ① 법원은 6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제외신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한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집단소송의 피고는 제3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절차 등 제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효중단의 효력) 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제15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3장 소송절차

제27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구성원 및 당사자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 및 피고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제29조(주장·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제30조(석명 등의 특칙) 법원이 상대방이 제29조제2항의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37조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31조(자료등 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 등 자료(이하 “자료등”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자료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가 제1항에 따라 자료등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345조, 제346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는 “자료등”으로 본다.

④ 법원은 자료등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등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등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등이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의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자료등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및 불복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7조 및 제3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는 “자료등”으로 본다.

⑦ 이 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자료등 제출명령 위반 등의 효과) 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자료등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료등의 기재, 현상 또는 내용은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료등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자료등의 기

재, 현상 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자료등으로 증명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자료등으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등을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3조(검증·감정)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하는 경우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여부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증거의 조사를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사를 통해 신청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 또는 사실관계에 상당

한 개연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지정전문가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하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여부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당사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관련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35조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⑫ 제11항의 경우 관련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⑬ 조사의 대상인 자료등을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의 액수와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 ⑯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 ⑰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⑱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35조(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집단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1조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

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8조(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르거나 증거조사를 통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1조(확정판결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2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구성원이 제3항의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제43조(소송 전 증거조사) ① 집단소송의 구성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이하 “소송 전 증거조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은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자료등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제44조(신청 내용과 방식) ①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조사하고자 하는 증거
4.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사유
5.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6. 집단소송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정

② 소송 전 증거조사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가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신청서에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소송 전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5조(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 등) ①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소송 전 증거조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소송 전 증거조사로써 신청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비용 또는 부담이 월등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6조(증거유지명령) ① 법원은 소송 전 증거조사에서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한을 정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등과 검증·감정의 목적물에 한정한다)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1항의 증거를 전자적 형태로 가지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유

지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원본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하 “증거유지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증거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7조(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등) ①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및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송 전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는 집단소송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④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은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다만, 아직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보낼 수 있다.

제48조(소송 전 증거조사의 시행 및 종결)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관한 협의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정리기일을 열어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의 시행 결과를 정리하고,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거조사의 결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2. 법원의 결정·명령을 어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정리기일조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9조(제소명령 등) ① 신청인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가 끝난 후에도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0조(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 ①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②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의 계산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제44조제1항제5호를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법원은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④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제51조(증거유지명령 위반의 효과) 상대방이 증거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분배절차

제52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53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분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의 기간·장소 및 방법
6. 권리의 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6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②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제57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

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2. 권리실행 비용
3. 분배에 소요되는 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8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5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5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제59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60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제61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2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64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65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69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6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66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금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6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8조(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금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69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71조(추가 분배) 제67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72조(위임규정)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73조(배임수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74조(배임증재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75조(몰수·추징) 제73조 및 제74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원은 결정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등 제출명령 또는 송부 촉탁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46조제1항의 증거유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